**붙임3**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

**제12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 삭제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채용시행세칙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사의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3.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